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2
----------	-----

발의년월일 : 2016년 4월 15일

발 의 자 : 구본승 의원

찬 성 자 : 김영준 의원, 박문수 의원

1. 제안이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누어주는 재능나눔 활동에 대한 권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개정함(안 제명)
- 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다.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주민생활지원과

라. 입법예고(2016. . . ~ 2016. . .) 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 제1조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주민 및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규정하고 주민 및 봉사단체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한다.
- 제2조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자원봉사자”를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로 한다.
-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을 ““자원봉사활동”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원봉사단체”라 함은”을 ““자원봉사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을 ““자원봉사수요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원봉사센터”라 함은”을 ““자원봉사센터”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누어주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나.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다.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체육, 행사 지원 등

라.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전기, 디자인 등

마.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 지원 등

바. 교육 분야: 학습지도, 교육 및 진로 상담 등

사. 그 밖의 사회 서비스 분야

7. "재능기부자"란 재능나눔 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을 "마련하고"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센터"로 한다.

- 제6조제1호 중 "자원봉사자"를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원봉사"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행하는"을 "시행하는 재능나눔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원봉사수요자발굴 및"을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수요자발굴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한다.

- 제7조제3항 중 “조직에 관하여”를 “조직에”로 한다.
- 제9조의 제목 “(자원봉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센터의 운영”을 “센터의 운영과 재능나눔”으로, “자원봉사자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자원봉사”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성·운영”을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 제10조 중 “자원봉사”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로 한다.
- 제3장의 제목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본문 중 “자원봉사단체”를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단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조례·규칙”을 “조례·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단체”를 각각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봉사자”를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로,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원봉사”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로 한다.
- 제14조제1항 중 “자원봉사활동성화”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성화”로,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원봉사자”를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로, “자원봉사활동”을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취업 · 진학”을 “취업 · 진학”으로 한다.
-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u> 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 강북구 <u>자원봉사활동</u>의 기 본이념을 정하여 <u>자원봉사활동</u> <u>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u> <u>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주민</u> <u>및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u> <u>지원 ·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본이념) <u>자원봉사활동</u>은 주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 로 <u>자원봉사자</u> 자신이 민주시민 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 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자원봉사활동</u>"이라 함은 개</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u> 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 ----- <u>재능나눔 및 자원봉</u> <u>사활동</u>----- <u>공공기관</u> --- ----- ----- <u>규정하고 주</u> <u>민 및 봉사단체의 재능나눔 및</u> <u>자원봉사활동</u>----- -.</p> <p>제2조(기본이념) <u>재능나눔 및 자</u> <u>원봉사활동</u>----- ----- --- <u>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u> ----- ----- ----- ----- -----.</p> <p>제3조(용어의 정의) ----- ----- -----.</p> <p>1. "<u>자원봉사활동</u>"이란 -----</p>

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 카. (생략)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

가. ~ 카. (현행과 같음)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
-----.

3. "자원봉사단체"란 -----

-----.

4. "자원봉사수요자"란 -----

-----.

5. "자원봉사센터"란 -----

-----.

<신 설>

<신 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

6.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
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누어주
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
무, 행정 등

나.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
강관리 등

다.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체육, 행사 지
원 등

라.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전기, 디자인 등

마.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 지원 등

바. 교육 분야: 학습지도, 교육
및 진로 상담 등

사. 그 밖의 사회 서비스 분야

7. "재능기부자"란 재능나눔 활
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 재능나눔 및 자원봉
사활동----- 마련하고 --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단체·학교·기업·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 활동과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수요자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센터의 운영 및 조직) ①·

② (생략)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은

-----.

제5조(자원봉사센터 설치) ① -----
-----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센터-----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센터의 기능) -----
-----.

1.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2.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

3. -----
----- 시행하는 재능나눔 및 -----

4.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수요자발굴과 -----
5. -----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

제7조(센터의 운영 및 조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영시 센터에 소장과 운영요원을 두되 소장 및 운영요원의 직급 등 센터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원봉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 자원봉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자원봉사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생략)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접수하

----- 조직에 -----
-----.

제9조(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
-- 센터의 운영과 재능나눔 --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자문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

2. (현행과 같음)

④ ----- 구성 및 운영-----

-----.

제10조(관리) -----
-----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고 관리할 수 있다.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11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받은 자원봉사수요자가 제1항에 따른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단체 또는 사업은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

-----.

제3장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11조(보험가입) ① -----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

-----.

② -----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
-----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단체 -----

----- 조례·규칙 -----
-----.

② -----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단체-----

며, 경비를 지원받은 자원봉사 단체는 사업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 및 교육 등 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자원봉사 행사시 참여단체 지원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복비 및 재료비 등

제13조(포상 및 시상)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시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 현장 체험수기 등을 공모하여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에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

----- 재능
기부자 및 자원봉사단체-----
-----.

③ ----- 재능기부자 및 자
원봉사자-----

----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
동-----

1. ~ 3. (현행과 같음)
4.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

5. -----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제13조(포상 및 시상) ① -----
--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

② ----- 재능나눔 및 자원
봉사 -----

-----.

제14조(자원봉사자 우대 등) ① -
-----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강좌 또는 문화행사 등에 한하여 수강료를 지원하거나 초청 등 우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한 사람에게 자원봉사 인증서 또는 신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에게 취업·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활성화-----

-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② ----- 재

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③ ----- 재능기부자 및 자

원봉사자-----

----- 재능나눔 및 자원

봉사활동-----

----- 취업·

진학 -----

제15조(시행규칙) ----- 시

행에 -----

관 계 법 령

□ 자원봉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14.1.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주민 및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27>

제2조(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주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2.7.27>

가.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나. 사회복지 및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다. 환경보존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라.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마.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바.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사.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아.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자.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차.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카. 그 밖에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개정 2012.7.27>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7.27>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7.27>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2.7.27>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신설 2012.7.27>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7.27>

제 2 장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자원봉사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위치는 구청장이 구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2.7.27>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단체·학교·기업·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 활동과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수요자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센터의 운영 및 조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7.27>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7.27>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시 센터에 소장과 운영요원을 두되 소장 및 운영요원의 직급 등 센터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27>

제8조(지도감독) ①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현황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또는 필요시 조사·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7.27>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 자원봉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7.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7.27>

1. 자원봉사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주민대표 2명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27>

제9조의2(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7.27>

제10조(관리)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27,2015.12.31>

제 3 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11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받은 자원봉사수요자가 제1항에 따른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4.8, 개정 2012.7.27>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단체 또는 사업은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2.7.27,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비를 지원받은 자원봉사단체는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7.27>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및 교육 등 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7.27>

1. 교통비
2. 급식 및 숙박비
3. 차량임차비
4. 자원봉사 행사시 참여단체 지원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복비 및 재료비 등 <신설 2005.4.8, 개정 2012.7.27>

제13조(포상 및 시상)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시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 현장 체험수기 등을 공모하여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에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5.4.8, 개정 2012.7.27>

제14조(자원봉사자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강좌 또는 문화행사 등에 한하여 수강료를 지원하거나 초청 등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2.7.27>

② 구청장은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한 사람에게 자원봉사 인증서 또는 신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등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4.8, 후단신설 2005.4.8, 개정 2012.7.27>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에게 취업·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27>

부 칙 <2003. 7.25 조례 제476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8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22> 생략

부 칙 <2012. 7. 27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1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